

동물용 의약품등 시험실시기관 ☐ 지정 ☐ 변경지정 **신청서**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발급·처리 일	처리기간	가. 지정: 90일 나. 변경지정 1) 소재지·시험분야·시험항목: 90일 2) 그 밖의 사항: 14일
신청인	대표자			
	기관의 명칭		소재지	
구분	☐ 동물용의약품 ☐ 동물용의료기기			
시험의 종류	품목구분	☐ 동물용의약품·동물용의약외품 ☐ 동물용의료기기		
	시험분야	☐ 동물임상시험 ☐ 생물학적동등성시험 ☐ 비임상시험 (☐ 독성시험, ☐ 변이원성시험, ☐ 분석시험, ☐ 그 밖의 시험)		
변경 내용	지정받은 사항		변경하려는 사항	

「약사법」 제34조의2제1항·제34조의3제1항, 「의료기기법」 제10조제3항·제10조의2제1항 및 「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」 제8조의2제2항·제6항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등 시험실시기관 지정(변경지정)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담당자 성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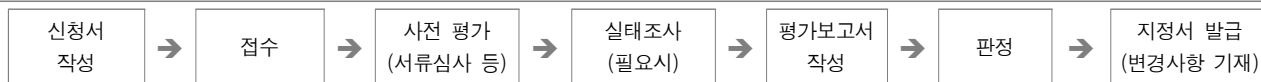
담당자 전화번호

농림축산검역본부장·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

신청인 제출 서류	지정	1.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(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) 2. 장비·기구 및 시설의 현황에 관한 서류 3.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험분야별로 비임상시험을 수행한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(비임상시험실시기관에 한정합니다)	수수료 농림축산 검역본부장 또는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장이 고시 한 금액
	변경 지정	1. 동물용 의약품등 시험실시기관 지정서 2.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	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	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처리 절차



신청인

처리기관 : 농림축산검역본부·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